**화장품의 적정 포장 규칙의 운영에 대해**

화장품의 적정 포장 규칙 제2조에 대해서는 당분간 다음과 같이 운용하기로 했으므로 고지합니다.

1975년 12월 7일

1. 제2조 제1항 관련

본 항에서 말하는 “불필요한 공간”이란 외부 용기와 직접 용기의 간격이 최대한 편측 3밀리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 이는 포장 공정에서의 기술적 지장을 고려한 것으로 가능한 한 적어야 바람직하다.

1. 제2조 제2항 관련

골판지 외 완충재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(1) 발포 스티롤, 플라스틱 등의 경우

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일 것

(2) 프레임이 있는 외부 용기의 경우

그 프레임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일 것

(3) 블리스터(blister) 가공의 경우

직접 용기를 쉽게 볼 수 있는 블리스터 가공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(1), (2)의 수치를 적용하지 않는다. 이 경우, 대지 크기에 대해서는 수치를 정하지 않지만 과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

1. 제2조 공통사항

메이크업 화장품류는 상품 거래의 실태로 보아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을 즉시 적용하면 너무 소형이 되어, 상품 관리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므로, 규칙 제4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당면 어쩔 수 없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.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과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 또한, 소형화장품(내용량이 30그램 또는 30밀리리터 이하)의 외부 용기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한 취지로 운용한다.

(1) 내부의 직접 용기가 쉽게 보이는 것

(2) 슬림 용기로 가장 넓은 면적이 40평방 센티미터 이하인 것